

#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

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###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동법제45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 (이하 "기금"이라한다) 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금의정의)**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.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.

**제3조 (기금의구분)**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 운영한다.

**제4조 (기금의조성)**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의 출연금
  2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
-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의 기금출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**제5조 (위원회구성)** ① 기금의 조성,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2.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3.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재활복지계장이 된다.

**제6조 (위원회의기능)**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,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
**제7조 (위원장의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 (위원의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단체, 기관대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

제9조 (회의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기금의운용관리) ①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 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.

②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 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% 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.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기금운용계획)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기금의 조성. 적립. 운용방법
2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운용기금의 사용)**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.

1.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
2. 장애인의 권리증진
3.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
4.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
5.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

**제14조 (관련규정의 준용)**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**제15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